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 관련)에서 공제한다(조특법 제19조제1항).

성과공유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 2(본 자료 [별첨1] 참조)에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을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계약이 연속 갱신된 경우 합산)
 - 월 60시간 이하의 단시간 근로자
 - 임원
 - 최대주주(출자자)와 그 배우자
 - 위 4에 해당하는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자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하는 고액임금자

경영성과급

-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을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최소 3개월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본 자료 [별첨2] 참조)
- 영업이익(기업회계기준에 따름)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여야 함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계속)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조특법 제19조제1항 단서).

상시근로자 수

-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text{상시근로자수} =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또한, 조특법 제127조(중복지원의배제)에 의하여 성과급 법인세액공제혜택은 다음과 같은 제도와 중복적용이 불가능하여, 다음 중 하나의 제도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제19조(경영성과급에대한세액공제), 제29조의4(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세액공제),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계속)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1}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 제19조제2항)

(*1) 적용 제외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2항)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이하 "최대주주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제1호)
-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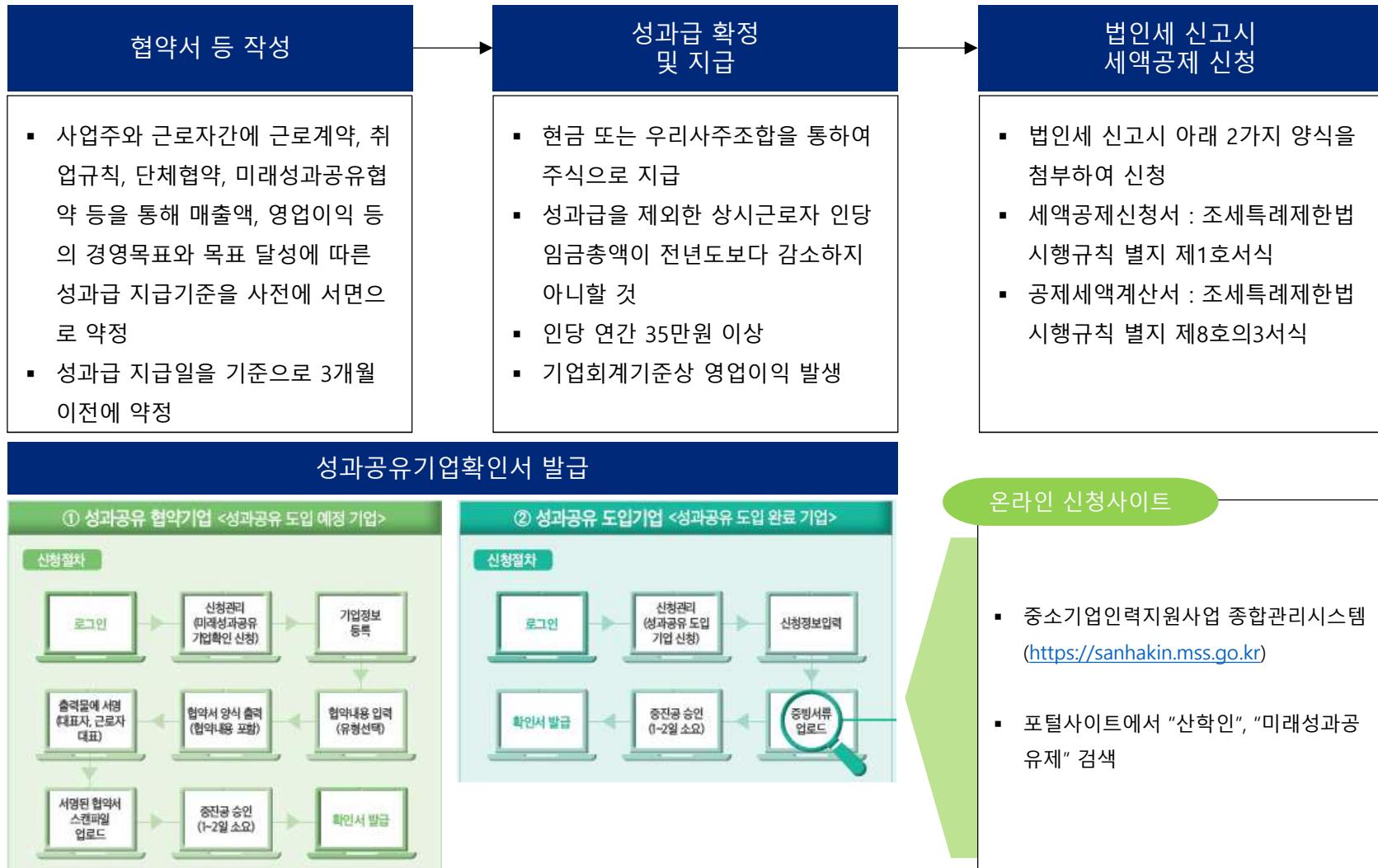
감면세액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근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frac{\text{경영성과급}}{\text{총급여액}} \times 50\%$$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의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함,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8항 참조

세액공제 신청절차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신청절차(계속)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조특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3. 20.> [시행일 : 2020. 1. 1.] 영·제9조제10항과 관련
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공제신청서

① 신청인		②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신청 내용																																																																																																																																																																																																																												
<table border="1"> <tr><td>④ 주</td><td>분</td><td>⑤ 균형법령</td><td>⑥ 코드</td><td>⑦ 공제율</td><td>⑧ 대상세액</td><td>⑨ 공제세액</td></tr> <tr><td>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td><td></td><td>영 제4조의8항</td><td>131</td><td></td><td></td><td></td></tr> <tr><td>⑪ 상생협력 지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td><td></td><td>영 제4조의4제6항</td><td>142</td><td></td><td></td><td></td></tr> <tr><td>⑫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td><td></td><td>영 제7조의2제6항</td><td>14M</td><td></td><td></td><td></td></tr> <tr><td>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 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td><td></td><td>영 제7조의2제8항</td><td>18D</td><td></td><td></td><td></td></tr> <tr><td>⑭ 수탁기념품 설치하는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td><td></td><td>영 제7조의2제12항</td><td>18L</td><td></td><td></td><td></td></tr> <tr><td>⑮ 신설창동리·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과학기술부처별로)</td><td></td><td>영 제9조제10항</td><td>13L</td><td></td><td></td><td></td></tr> <tr><td>⑯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학기술부처별로)</td><td></td><td>영 제9조제10항</td><td>13M</td><td></td><td></td><td></td></tr> <tr><td>⑰ 신설창동리·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과학기술부처별로)</td><td></td><td>영 제9조제10항</td><td>16A</td><td></td><td></td><td></td></tr> <tr><td>⑱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학기술부처별로)</td><td></td><td>영 제9조제10항</td><td>16B</td><td></td><td></td><td></td></tr> <tr><td>⑲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td><td></td><td>영 제11조제6항</td><td>17B</td><td></td><td></td><td></td></tr> <tr><td>⑳ 기술혁신형 학생에 대한 세액공제</td><td></td><td>영 제11조의3제14항</td><td>14T</td><td></td><td></td><td></td></tr> <tr><td>㉑ 기술혁신형 주식수당에 대한 세액공제</td><td></td><td>영 제11조의4제12항</td><td>14U</td><td></td><td></td><td></td></tr> <tr><td>㉒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td><td></td><td>영 제12조제1항</td><td>16E</td><td></td><td></td><td></td></tr> <tr><td>㉓ 소관부처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td><td></td><td>영 제17조제6항</td><td>18H</td><td></td><td></td><td></td></tr> <tr><td>㉔ 소연금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td><td></td><td>영 제22조의11제7항</td><td>18I</td><td></td><td></td><td></td></tr> <tr><td>㉕ 연구 및 인력개발 설치기구 세액공제</td><td></td><td>영 제22조</td><td>134</td><td></td><td></td><td></td></tr> <tr><td>㉖ 예·내지 절차설비 투자 세액공제</td><td></td><td>영 제22조의2</td><td>177</td><td></td><td></td><td></td></tr> <tr><td>㉗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td><td></td><td>영 제22조의3</td><td>14A</td><td></td><td></td><td></td></tr> <tr><td>㉘ 고로가족지원증진설비 투자 세액공제</td><td></td><td>영 제22조의4</td><td>142</td><td></td><td></td><td></td></tr> <tr><td>㉙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td><td></td><td>영 제22조의5</td><td>136</td><td></td><td></td><td></td></tr> <tr><td>㉚ 신설설비시설투자 세액공제</td><td></td><td>영 제22조의6</td><td>135</td><td></td><td></td><td></td></tr> <tr><td>㉛ 의약품제조설비 투자 세액공제</td><td></td><td>영 제22조의8</td><td>14B</td><td></td><td></td><td></td></tr> <tr><td>㉜ 신설창기술 사업화를 위한 사업투자 세액공제</td><td></td><td>영 제22조의9</td><td>18B</td><td></td><td></td><td></td></tr> <tr><td>㉝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td><td></td><td>영 제22조의10</td><td>18C</td><td></td><td></td><td></td></tr> <tr><td>㉞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td><td></td><td>영 제23조제16항부터 제17항까지</td><td>14N</td><td></td><td></td><td></td></tr> <tr><td>㉟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출입자를 방역 이행 후 평지시간 증가(상여)에 대한 세액공제</td><td></td><td>영 제26조의2제3항</td><td>14S</td><td></td><td></td><td></td></tr> <tr><td>㉟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증가(상여) 세액공제</td><td></td><td>영 제26조의3제5항</td><td>14X</td><td></td><td></td><td></td></tr> <tr><td>㉟ 유아돌봄 추가 고용(기준내) 인센티브 세액공제</td><td></td><td>영 제26조의3제6항</td><td>18J</td><td></td><td></td><td></td></tr> <tr><td>㉟ 고로수도권 종래지인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td><td></td><td>영 제26조의3제7항</td><td>14Y</td><td></td><td></td><td></td></tr> <tr><td>㉟ 청년고용을 중대지인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td><td></td><td>영 제26조의6제11항</td><td>18A</td><td></td><td></td><td></td></tr> </table>				④ 주	분	⑤ 균형법령	⑥ 코드	⑦ 공제율	⑧ 대상세액	⑨ 공제세액	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의8항	131				⑪ 상생협력 지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4조의4제6항	142				⑫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6항	14M				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 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8항	18D				⑭ 수탁기념품 설치하는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12항	18L				⑮ 신설창동리·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과학기술부처별로)		영 제9조제10항	13L				⑯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학기술부처별로)		영 제9조제10항	13M				⑰ 신설창동리·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과학기술부처별로)		영 제9조제10항	16A				⑱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학기술부처별로)		영 제9조제10항	16B				⑲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B				⑳ 기술혁신형 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㉑ 기술혁신형 주식수당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㉒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제1항	16E				㉓ 소관부처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영 제17조제6항	18H				㉔ 소연금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1제7항	18I				㉕ 연구 및 인력개발 설치기구 세액공제		영 제22조	134				㉖ 예·내지 절차설비 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	177				㉗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3	14A				㉘ 고로가족지원증진설비 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	142				㉙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5	136				㉚ 신설설비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	135				㉛ 의약품제조설비 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8	14B				㉜ 신설창기술 사업화를 위한 사업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9	18B				㉝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0	18C				㉞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6항부터 제17항까지	14N				㉟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출입자를 방역 이행 후 평지시간 증가(상여)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2제3항	14S				㉟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증가(상여)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5항	14X				㉟ 유아돌봄 추가 고용(기준내) 인센티브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8J				㉟ 고로수도권 종래지인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7항	14Y				㉟ 청년고용을 중대지인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6제11항	18A			
④ 주	분	⑤ 균형법령	⑥ 코드	⑦ 공제율	⑧ 대상세액	⑨ 공제세액																																																																																																																																																																																																																						
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의8항	131																																																																																																																																																																																																																									
⑪ 상생협력 지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4조의4제6항	142																																																																																																																																																																																																																									
⑫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6항	14M																																																																																																																																																																																																																									
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 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8항	18D																																																																																																																																																																																																																									
⑭ 수탁기념품 설치하는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12항	18L																																																																																																																																																																																																																									
⑮ 신설창동리·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과학기술부처별로)		영 제9조제10항	13L																																																																																																																																																																																																																									
⑯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학기술부처별로)		영 제9조제10항	13M																																																																																																																																																																																																																									
⑰ 신설창동리·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과학기술부처별로)		영 제9조제10항	16A																																																																																																																																																																																																																									
⑱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학기술부처별로)		영 제9조제10항	16B																																																																																																																																																																																																																									
⑲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B																																																																																																																																																																																																																									
⑳ 기술혁신형 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㉑ 기술혁신형 주식수당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㉒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제1항	16E																																																																																																																																																																																																																									
㉓ 소관부처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영 제17조제6항	18H																																																																																																																																																																																																																									
㉔ 소연금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1제7항	18I																																																																																																																																																																																																																									
㉕ 연구 및 인력개발 설치기구 세액공제		영 제22조	134																																																																																																																																																																																																																									
㉖ 예·내지 절차설비 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	177																																																																																																																																																																																																																									
㉗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3	14A																																																																																																																																																																																																																									
㉘ 고로가족지원증진설비 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	142																																																																																																																																																																																																																									
㉙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5	136																																																																																																																																																																																																																									
㉚ 신설설비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	135																																																																																																																																																																																																																									
㉛ 의약품제조설비 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8	14B																																																																																																																																																																																																																									
㉜ 신설창기술 사업화를 위한 사업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9	18B																																																																																																																																																																																																																									
㉝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0	18C																																																																																																																																																																																																																									
㉞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6항부터 제17항까지	14N																																																																																																																																																																																																																									
㉟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출입자를 방역 이행 후 평지시간 증가(상여)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2제3항	14S																																																																																																																																																																																																																									
㉟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증가(상여)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5항	14X																																																																																																																																																																																																																									
㉟ 유아돌봄 추가 고용(기준내) 인센티브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8J																																																																																																																																																																																																																									
㉟ 고로수도권 종래지인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7항	14Y																																																																																																																																																																																																																									
㉟ 청년고용을 중대지인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6제11항	18A																																																																																																																																																																																																																									
210mm×297mm[작성지 80g/m ² 또는 총질지 80g/m ²]																																																																																																																																																																																																																												

(주) 해당 서식의 최신 버전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참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9. 3. 20.>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① 신청인	②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세액공제 계산내용																																													
<table border="1"> <tr> <td>④ 설명(설명, 부록)</td> <td>⑤ 경영성과급 서현액</td> <td>⑥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어부</td> <td>⑦ 경영성과급 금액</td> <td>⑧ 성과급 합계액</td> </tr> <tr> <td>A (. . .)</td> <td>어, 부</td> <td>어, 부</td> <td></td> <td></td> </tr> <tr> <td>B (. . .)</td> <td>어, 부</td> <td>어, 부</td> <td></td> <td></td> </tr> <tr> <td>C (. . .)</td> <td>어, 부</td> <td>어, 부</td> <td></td> <td></td> </tr> <tr> <td>D (. . .)</td> <td>어, 부</td> <td>어, 부</td> <td></td> <td></td> </tr> <tr> <td>E (. . .)</td> <td>어, 부</td> <td>어, 부</td> <td></td> <td></td> </tr> </table>			④ 설명(설명, 부록)	⑤ 경영성과급 서현액	⑥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어부	⑦ 경영성과급 금액	⑧ 성과급 합계액	A (. . .)	어, 부	어, 부			B (. . .)	어, 부	어, 부			C (. . .)	어, 부	어, 부			D (. . .)	어, 부	어, 부			E (. . .)	어, 부	어, 부															
④ 설명(설명, 부록)	⑤ 경영성과급 서현액	⑥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어부	⑦ 경영성과급 금액	⑧ 성과급 합계액																																									
A (. . .)	어, 부	어, 부																																											
B (. . .)	어, 부	어, 부																																											
C (. . .)	어, 부	어, 부																																											
D (. . .)	어, 부	어, 부																																											
E (. . .)	어, 부	어, 부																																											
나. 살시근로자 수 계산																																													
<table border="1"> <tr> <td colspan="8">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살시근로자 수</td> <td>⑩ 계월수</td> <td>⑪ 상시 근로자수 (⑩+⑪)</td> </tr> <tr> <td>구 분</td> <td>월</td> </tr> <tr> <td>회계 과세연도</td> <td></td> </tr> <tr> <td>조직 과세연도</td> <td></td> </tr> </table>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살시근로자 수								⑩ 계월수	⑪ 상시 근로자수 (⑩+⑪)	구 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회계 과세연도											조직 과세연도										
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살시근로자 수								⑩ 계월수	⑪ 상시 근로자수 (⑩+⑪)																																				
구 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회계 과세연도																																													
조직 과세연도																																													
다. 평균세액 계산																																													
<table border="1"> <tr> <td>⑨ 경영성과급 (= ⑧)</td> <td>⑩ 공제율</td> <td>⑪ 세액공제금액(⑨×⑩)</td> </tr> <tr> <td colspan="3">10%</td> </tr> </table>			⑨ 경영성과급 (= ⑧)	⑩ 공제율	⑪ 세액공제금액(⑨×⑩)	10%																																							
⑨ 경영성과급 (= ⑧)	⑩ 공제율	⑪ 세액공제금액(⑨×⑩)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취득 금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환																																													
작성방법																																													
1.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일자리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일자리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건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우리사주 포함)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한 성과급을 말합니다. 3. 나. 살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제2호 각 복의 차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살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살시근로자 수 중 100명의 1/4인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⑨을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살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 5. ⑩ 계월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6. 살시근로자 수가 전년 보다 감소(⑩-<0>)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신청절차(계속)

증빙 서류(예시)

구분	내용
1. 성과공유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공유 확인서("성과급" 유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 또는 "성과급" 유형을 사전약정한 협약서)
2. 상시근로자에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대장▪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3. 경영성과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급 지급일 3개월 이전 합의된 성과급 약정서(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성과공유협약서 중 하나)▪ 급여대장▪ 우리주주 무상 출연 약정서▪ 예탁일자별 예탁확인서(조합원별 주식 예탁현황) 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인당급여총액 비교표(2개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영업이익 확인)
4. 상시 근로자수 비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지제8호의3 서식▪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주) 상기 서류는 예식 목적이며, 회사의 특성 및 실질에 맞게 세액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야 함.

근로자의 세액감면 신청절차

근로자는 성과급을 지급받은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회사에게 제출, 회사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조특법 시행령 제17조제9항 및 제10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신설 2019. 3. 20.>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신청서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1. 신청인	③ 주소		
2. 감면 요건			
적용 요건	여	부	
④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3. 감면대상 성과급			
⑥ 지급확정일	년	월	일
⑦ 지급금액	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유의사항

- 공제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기반세를 기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 감연을 신청한 경우 수령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확정일은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날을 말하며, 계량적 · 비계량적 요소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지급일이 확정되는 날을 말합니다.
- 「총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친족 존속, 친속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신설 2019. 3. 20.>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_____)

2. 감면 적용 대상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영성과급 서면악정여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여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경영성과급 금액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0항에 따라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주의사항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협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친족 존속, 친속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주) 해당 서식의 최신 버전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참조

[별첨1] 성과공유유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 2)

구분	내용	
1. 성과급의 지급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을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최소 3개월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2. 성과보상공제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3. 임금수준의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보다 클 것(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은 매년 9월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 	
4. 우리사주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 	
5. 복지기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7. (*1) 세액공제대상인 성과공유유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우수 중소기업(중벤처기업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업(특허청)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고용노동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가정 양립 제도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가진 기업(여성가족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고용노동부)
	청년친화 강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복·지고용안정 등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고용노동부)

[별첨 2] 세액공제 대상 성과급 요건(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18-50호 제3조)

구분		내용
1	서면 약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성과공유협약 등을 통해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경영목표와 목표 달성을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2	3개월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서면 약정은 성과급 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3	현금 또는 우리사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성과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 : 경영목표 달성을 따른 성과를 근로자가 공유하기 위해 사업주가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성과공유 상여금✓ 주식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한 금전과 물품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
4	인당 임금총액 미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근로자의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임금총액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5	인당 35만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일 것.